

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※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.			
신 청 인	상 호		
	대 표 자 성명	생년월일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전자우편주소		
신청내용	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		
	재발급 사유(별첨 가능)		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(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)		수수료 1만5천원		
처리절차					
신 청 신청인	→ 접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→ 검 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→ 기안·결재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→ 허가증 작성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→ 허가증 발급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